외국인투자 촉진법 [시행 2009.8.7] [법률 제 9432호, 2009.2.6, 타법개정]

지식경제부 (투자정책과)02-2110-5353

제 1 장 총칙 <개정 2009.1.30>

제 1 조 (목적)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2 조 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외국인"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,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(이하 "외국법인"이라 한다)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.
 - 2. "대한민국국민"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.
 - 3. "대한민국법인"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- 4. "외국인투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(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)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(이하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소유하는 것

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 년 이상의 차관(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)

- 1)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(모기업)
- 2) 1)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
- 3) 외국투자가
- 4) 3)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

다.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(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)으로서 연구인력 · 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(출연)하는 것

- 라.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 27 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(이하 "외국인투자위원회"라 한다)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
- 5. "외국투자가"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.
- 6. "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"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.
- 7. "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"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

- 8. "출자목적물(출자목적물)"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나. 자본재
 - 다.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(과실)
- 라. 산업재산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
- 마.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·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
 - 바. 제 4 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
 - 사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
 - 아. 국내에 있는 부동산
 - 자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
- 9. "자본재"란 산업시설(선박, 차량,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)로서의 기계, 기자재, 시설품, 기구, 부분품, 부속품 및 농업·임업·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, 종자, 수목(수목), 어패류, 그 밖에 주무부장관(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(시험사업을 포함한다)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·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·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.
- 10. "기술도입계약"이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이나 그 밖에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을 말한다.
-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.

- 제 3 조 (외국인투자의 보호 등)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, 주식등의 매각 대금, 제 2 조제 1 항제 4 호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・기술도입계약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.
- 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.
- ③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, 외국인투자기업, 제 2 조제 1 항제 4 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대주(대주) 및 제 25 조에 따라 기술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된다.

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4조 (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) ①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②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.

- 1.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
- 2.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
- 3.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
- ③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 4 조의 2 (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)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 촉진시책(이하 "촉진시책"이라 하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외국인투자 촉진의 기본방향
- 2.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국내의 산업구조 등 외국인투자 여건의 분석
- 3. 외국인투자 유치방안
- 4.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방안
-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, 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」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이하 "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"라 한다)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에게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제 3 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·도지사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관계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2 장 외국인투자 절차 <개정 2009.1.30>

제 5 조 (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)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(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)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, 외국인투자비율(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6 조 (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) ① 외국인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(이하 "기존주식등"이라 한다)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, 외국인투자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권상장법인(같은 법 제 152 조제 3 항에 따른 공공적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)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30 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2.3>

-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- ③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, 외국인투자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3 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-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4 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4 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달 수 있다.
- ⑦ 제 3 항 및 제 6 항을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그 기존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,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3 항 및 제 6 항을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존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.
- ⑧ 제 1 항부터 제 7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7조 (합병 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) ①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1.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, 재평가적립금,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
- 2.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,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,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
- 3. 외국인이 제 21 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, 상속, 유증(유증)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
- 4.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

- 5. 외국인이 전환사채, 교환사채, 주식예탁증서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 ·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(사채)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 · 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
-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) ① 외국인은 제 2 조제 1 항제 4 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내용 중 차관도입금액, 차관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8 조의 2 (출연 방식의 외국인투자) ① 외국인은 제 2 조제 1 항제 4 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내용 중 출연금액, 출연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3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<개정 2009.1.30>

제 9 조 (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)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, 소득세, 취득세, 등록세,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10 조 삭제 <1999.5.24>

제 11 조 삭제 <1999.5.24>

제 12 조 삭제 <1999.5.24>

제 13 조 (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) ① 기획재정부장관, 국유재산의 관리청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의 장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(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지방공기업"이라 한다)의 장은 국가・지방자치단체・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・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(이하 "토지등"이라 한다)을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또는
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(이하 이 조 및 제 14 조에서 "외국인투자기업등"이라 한다)에게 사용・수익 또는 대부(이하 "임대"라 한다)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.

- ② 제 1 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「국유재산법」 제 35 조제 1 항, 제 46 조제 1 항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 21 조제 1 항, 제 31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50 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.30>
- ③ 제 1 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 18 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 13 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.30>
- ④ 제 1 항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「국유재산법」 제 32 조제 1 항, 제 47 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 22 조 · 제 32 조 · 제 35 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,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.30>
- ⑤ 제 1 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 50 조제 1 항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 37 조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39 조제 3 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.30>
- ⑥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 38 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.
- 1. 제 18 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
- 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 6 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(이하 "국가산업단지"라 한다)에 있는 토지등
- 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 7 조 · 제 7 조의 2 및 제 8 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
- ⑦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제 32 조제 1 항 및 제 47 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.30>
-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 22 조·제 24 조·제 32 조 및 제 34 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.
- ⑨ 제 6 항부터 제 8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 38 조에도 불구하고 50 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.

⑩ 제 2 항 및 제 9 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 2 항 및 제 9 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 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14 조 (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)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 18 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,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,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(감면분)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,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. ② 제 1 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.

- ③ 국가는 매년 제 1 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(계상)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거나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지급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14 조의 2 (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및 기술이전효과, 고용창출규모,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,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 천만달러 이상이고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(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)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
- 2.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 천만달러 이상이고, 「부품·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부품·소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·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
- 3.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 천만달러 이상이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(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)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
- 4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사업(이하 이 호에서 "사업"이라 한다)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 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 명 이상이고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

가.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나. 제 2조제 1항제 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

- 5.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제 1 항에 따른 현금지원 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- ③ 제 1 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 1 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,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- 제 14 조의 3 (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공공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제 1 항에 따른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[전문개정 2009.1.30]

- 제 15 조 (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의 설치)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・안내・홍보・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, 창업보육,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(이하 "투자지원센터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(이하 "유관기관"이라한다)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투자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.
-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투자지원센터에 그 기관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④ 투자지원센터는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, 제 2 항에 따라 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(이하 "파견관"이라 한다)은 투자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한다.
- ⑤ 제 2 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·파견하여야 하며, 파견기간 중 파견 근무를 해제하려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⑥ 제 2 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파견관에 대하여 승진, 전보, 포상, 후생복지 등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⑦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 1 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⑧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고충처리기구를 둔다.
- ⑨ 투자지원센터 및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15 조의 2 (외국인투자옴부즈만)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다.

- ② 제 1 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(이하 "외국인투자옴부즈만"이라 한다)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.
- ③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제 3 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(누설)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「형법」 제 129 조부터 제 132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16조 (외국인투자진흥관실)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

허가・인가・면허・승인・지정・해제・신고・추천・협의 등(이하 "허가등"이라 한다)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,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

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의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지정하거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투자지원센터로부터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사무 등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을 받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17조 (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<개정 2009.1.30>)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오른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9.1.30>

- ②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사무(이하 "직접처리민원사무"라 한다)는 파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. 이경우 파견관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직접처리민원을 소속 파견관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.30>
-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, 의뢰를 받은 투자지원센터의 장은 그 중 별표 1 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(이하 "일괄처리민원사무"라 한다)와 별표 2 의 외국인투자 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(이하 "개별처리민원사무"라 한다)를 민원처리기관의 장(일괄처리민원사무의 경우에는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관의 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이송(이송)하여 처리하도록 하고, 그 사실을 관할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09.1.30>
- ④ 제 3 항에 따라 민원신청서류를 받거나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민원신청서류를 접수한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제 5 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, 관계기관의 장이 제 5 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9.1.30>
- ⑤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처리민원사무(별표 1 오른쪽 난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개별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를 말한다),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처리하여야 하며, 그 처리기간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허가등을 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처리기간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외국인투자진흥관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. <개정 2009.1.30>
- ⑥ 제 5 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과 파견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체 없이 그 허가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.30> ⑦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제 5 항 후단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당초의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허가등을 할 때 당초의 거부사유 외의 사유로써 그 허가등을 거부하지 못한다. <개정 2009.1.30>
- ⑧ 제 4 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 7 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09.1.30>
- 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 2 항부터 제 8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괄처리민원사무,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을 받으려면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.30>
- ⑩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과 관련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등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.30>

- ①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때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등을 받아야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원사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원사무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9.1.30>
 - 1. 일괄처리민원사무
 - 2. 개별처리민원사무
 - 3. 직접처리민워사무
- 4.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
- ① 삭제 <2003.12.31>
- ③ 제 1 항부터 제 11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1.30>

제 4 장 외국인투자지역 <개정 2009.1.30>

제 18조 (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·개발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(이하 "외국인투자지역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 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 7조 및 제 7조의 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 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 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(전용)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
- 2.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
- ② 둘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 2 호의 지역을 시·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하려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 - 1.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
 - 2. 개발 또는 관리 방법
- 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 7 조의 4 에 따른 고시사항(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)
- 4.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용,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④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그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,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·도지사가 관리하며,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·도지사가 개발·관리하다.

- 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.
- ⑥ 외국인투자지역을 제 5 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 7조제 2 항 및 제 7조의 2 제 4 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, 제 3 항에 따른 고시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 7조의 4 에 따른 고시로 본다.
- ⑦ 외국인투자지역을 제 5 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·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「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 12 조제 1 항 중 "산업단지"를 "외국인투자지역"으로, 같은 법제 22 조제 2 항 중 "산업단지의 지정·고시가 있는 때"를 "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·고시가 있는 때"로 본다.
- ⑧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 19 조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⑨ 시·도지사는 제 3 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⑩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① 제 4 항에 따른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18 조의 2 (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) ① 시·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 18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. ② 제 1 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19조 (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) ①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, 도로, 용수시설, 철도, 통신,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 28조 및 제 29조를 준용한다.

② 외국인투자지역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 36 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.

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20 조 (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) ①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56 조제 1 항제 4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「대외무역법」 제 11 조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.

- ③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1.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 30 조
-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33 조의 2 제 1 항, 「5 ·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 24 조의 2 제 1 항,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 21 조제 2 항

[적용 2011.12.31 까지]

제 5 장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<개정 2009.1.30>

제 21 조 (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)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증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- 1.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
- 2. 제 6조에 따라 기존주식등을 취득(그 기존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한다)한 경우
- 3. 제 7조제 1항제 5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
- 4. 제 8조의 2에 따른 출연을 마친 경우
- ②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치기 전 또는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기존주식등의 취득대금을 정산하기 전이라도 제 2 조제 1 항제 4 호가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.
-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.
- 1. 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2 년 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
- 2. 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제 6 조제 3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제 28 조제 5 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4.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
 - 5.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
- 6.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(가장)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22 조 (자본재의 처분 제한 등)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 9 조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신고 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- ③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제 4 조제 3 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행위
- 2. 제 4 조제 3 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
- ④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 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23 조 (주식등의 양도 등) ① 외국투자가가 제 5 조부터 제 7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려 하거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한 주식등을 감소시키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② 외국투자가는 제 21 조제 3 항 각 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한 주식등을 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 개월의 범위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제 21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가가 제 28 조제 5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그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 개월의 범위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24 조 (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·작성)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시·도지사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, 국제수지, 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·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
- ② 제 1 항에 따라 자료·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시·도지사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·통계 등을 수집·작성하는 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6 장 기술도입계약 <개정 2009.1.30>

제 25 조 (기술도입계약의 신고) ①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

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.

-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- ③ 제 1 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기술도입계약은 신고일부터 6 개월 이내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야 하며, 신고한 기술도입계약이 이 기간에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효력 발생기간에 관하여 미리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기술도입이 제 4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도입을 할 수 없다.

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26 조 (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)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7 장 보칙 <개정 2009.1.30>

제 27 조 (외국인투자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둔다.

- 1.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
- 2.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3.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
- 4.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
- 5.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
- 6. 제 2 조제 1 항제 4 호라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
- 7. 제 14 조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
- 8. 제 14 조의 2 의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
- 9. 제 14 조의 3 제 2 항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
- 10. 제 18조 및 제 19조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11.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사항
- ②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,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1. 기획재정부장관, 외교통상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교육과학기술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농림수산식품부장관, 환경부장관, 노동부장관, 국토해양부장관, 금융위원회위원장
- 2.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
- ③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·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추진현황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9.1.30]
- 제 28 조 (보고·조사 및 시정 등) ① 지식경제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투자가, 외국인투자기업, 기술도입자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, 관계 금융기관의 장,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- 1.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(출자목적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자본재의 도입·사용·처분에 관한 사항
 - 2. 기술도입에 관한 상황
 - 3.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 또는 신고한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
- ③ 제 2 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 일 전까지 조사일시, 조사이유,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제 2 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, 출입 시 성명, 출입시간, 출입목적 등을 문서에 적어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.
-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자, 기술도입자,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1. 이 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
 - 2. 제 4 조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
- ⑥ 세관장은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한 자가 「관세법」에 규정된 장치기간(장치기간)에 자본재를 통관·인수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.

제 29 조 (도입자본재등의 검토·확인)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 또는 제 2 조제 1 항제 4 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(이하 이 조에서 "자본재등"이라 한다)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검토·확인을 받을 수 있다.

② 제 1 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검토·확인을 받은 자본재등은 「대외무역법」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30 조 (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) ① 이 법 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「외국환거래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② 외국인투자기업은 「상법」 제 462 조의 2 제 1 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「상법」 제 434 조에 따른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.
- ③ 외국투자가가 제 2조제 1 항제 8 호나목의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「상법」 제 299 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・수량・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를 「상업등기법」 제 80 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본다. 회사설립 후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제 2 조제 1 항제 8 호라목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「상법」 제 299 조의 2 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.
- ⑤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해당 사업을 하려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「자산재평가법」 제 4 조에도 불구하고 매월 1 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「자산재평가법」에 따른 재평가를 할 수 있다.
- ⑥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·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31 조 (권한의 위임 등) 지식경제부장관, 주무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, 관세청장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,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8 장 벌칙 <개정 2009.1.30>

제 32 조 (벌칙) 이 법에 따른 대외송금, 외국인투자 또는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국외에 외화자금을 도피시킨 자(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 배 이상 10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도피시킨 외화자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. 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33 조 (벌칙) 제 22 조를 위반하여 자본재의 처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34 조 (벌칙)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35 조 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제 6조제 3 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
- 2. 제 15 조의 2 제 4 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
- 3. 제 28 조제 5 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[전문개정 2009.1.30]

제 36조 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32조부터 제 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과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[전문개정 2008.12.26]

제 37 조 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제 6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
- 2. 제 28 조제 2 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 제 1 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부과·징수한다.

[전문개정 2009.1.30]

부칙(식품위생법) <제 9432 호, 2009.2.6>

제 1 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제 2 조부터 제 5 조까지 생략

제 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⑤ 까지 생략

<16> 법률 제 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 제 7호나목 중 "「식품위생법」 제 22조에 따른"을 "「식품위생법」 제 37조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표 제 10호타목 중 "「식품위생법」 제 22조에 따른"을 "

「식품위생법」 제 37 조에 따른"으로 한다.

<17> 부터 <30> 까지 생략

제 7조 생략